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

제 1 장 총칙

제18조(교육·훈련 등)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③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.<신설 2011.3.9><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11.3.9>

④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.<제3항에서 이동,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1.3.9>

⑤ 제4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.<개정 2008.2.29, 2011.3.9><제4항에서 이동,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11.3.9>

⑥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.<제5항에서 이동 2011.3.9>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[시행 2008. 3. 4] [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, 2008. 3. 4. 타법개정]

교육과학기술부 (연구환경안전팀), 02-2100-6668~91

[별표]

교육·훈련의 시간 및 내용(제9조 관련)

교육 과정	교육 대상	교육 시간	교육 내용
정기 교육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매월 1시간 이상	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·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신규채용 등에 따른 교육·훈련	신규채용된 연구활동종사자(계약직 포함)	8시간 이상	·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·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·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·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
	대학·연구기관 등에 채용된 자 외의 자로서 신규로 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(대학생·대학원생 등)	2시간 이상	
연구내용 변경에 따른 교육·훈련	연구활동종사자	2시간 이상	· 연구실내 유해·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· 안전한 연구개발 활동에 관한 사항 ·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 · 그 밖에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